

# 인용·전재는 저작물 자유이용의 편법이 될 수 없다

韓勝憲

변호사·한국저작권 연구소 소장

安兄! 1987년 7월은 출판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밀어닥친 달입니다. 30년만에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이 7월 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 초 하룻날에는 세계저작권조약(UCC)이 한국에서도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 해주어야 하니 우리 지식산업계가 걱정해 줘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자 그동안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회, 세미나, 강좌다 하는 모임들이 연달아 열린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安兄께서도 들으신대로,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저작물의 인용과 轉載에 관해서는 유난히도 많은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가자들이 주로 출판과 잡지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었고 보면, 인용 전재의 명목을 빌어 남의 글을 손쉽게 이용할 편법을 궁리하는듯한 느낌도 들더군요.

하지만, 그런 발상은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의 한 형태인 「인용(Quotation)」은 남의 글을 제한없이 옮겨 쓸 수 있는 방편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安형! 새 저작권법 제25조를 함께 읽어 봅시다. 거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의 주체인 자기저작물의 존재가 전제된 다음에야 인용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용의 목적인 「보도·비

**“남의 글을 통채로 옮겨 쓰는 것은 결코 인용의 목적상 필요한  
즉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라 볼 수 없지요……  
전재란 문장의 복제인용과 다를 바 없으므로  
권리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봐야 합니다”**

평·교육·연구는 예시적인 나열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밖에 例證 해설 보충 강조를 위한 인용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유로 인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라고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한계는 법의 해석작용이나 법원의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安형도 아시다시피 저작권법에서는 「절록(節錄)인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작물의 부분인용만 허용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법에는 그런 제한적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한편의 글 전부의 인용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詩라든가 아주 짧은 글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일반적으로는 남의 글을 통채로 옮겨 쓰는 것은 결코 인용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즉 정당한 범위안에서의 인용이라고 볼 수 없지요. 어디까지나 자기의 글이 주가 되고 인용 당하는 글은 從的이어야 합니다. 즉 인용되는 글은 인용주체가 된 글에 대하여 종속 보충 강조의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이나 주석을 위해서 여러편의 남의 시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정당한 범위내의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컨대, 인용의 목적·성격·인용당하는 저작물의 성질·저작물 전체에서 인용당하는 부분의 질과 양 등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요.

전재(轉載)는 이용범위에 있어서 인용보다는 융통성이 넓은 느낌을 주는 어휘입니다. 全文을 옮겨 쓰는 것이 바로 「전재」라고 말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 저작권법에 「전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재는—인용과는 달리—저작물 자유이용의 한 사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인 남의 글을 전재할 수 없으니, 이것은 외국인 저작물의 이용에도 장벽이 될 것입니다.

전재란 실질적으로 문장의 복제이용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의당 권리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고 봐야 하겠읍니다. 즉, 전재의 자유는 복제권의 유명무실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매우 제한적으로나마 전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없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일반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공표한 자료 통계 보고서 등은 신문·잡지 그밖의 간행물에 설명자료로서 전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 뿐만 아니라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학술적인 성질을 띤 것은 제외)은 다른 신문·잡지에 전재할 수 있습니다. (위 법 제39조)

그런데 安형! 저작권법에는 웬일인지 일본

법의 위 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문잡지들의 간행물에서 자유로 전재해도 좋은 저작물은 없는 셈이어서 그만큼 융통성이 없고 불리합니다. 「무단전재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고 해서 아무나 전재해도 괜찮은 것으로 오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인용」에는 너무 제약이 많은데다가 전재는 예외없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의 차선택으로 「요약이용」의 발상이 머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요약 중에서 다이제스트(Digest)는 글의 주제와 줄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현만 바꾸어 분량을 단축시키는 것이어서, 결국 번안(번)Adaptation의 문제와 부딪힐 위험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같은 요약 중에서도 내용의 대폭적인 압축 총괄을 뜻하는 Summary는 번안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면 다이제스트의 한계 설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용, 전재 그리고 요약—그 어느 것도 잡지사나 출판사가 외국인의 저작물을 가져 이용할 수 있는 편법은 되지 못합니다.

모처럼 지혜(?)를 동원하여 인용과 전재의 활용가능성을 물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법을 만드는 권한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외국인 저작물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부담스럽고 불편하더라도 이제 계약이라는 正攻法을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安형께서 만드시는 잡지가 「UCC홍역」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어서 면역체질을 갖추게 되기를 빕니다.

**廉想涉全集**  
全12卷

1 萬歲前外	7 驟雨·花冠
2 사랑과 죄	8 젊은 세대 외
3 二心	9 초기단편
4 三代	10 중기단편
5 白鳩	11 후기단편
6 牡丹꽃 필 때	12 評論·隨筆集

〈별권〉 廉想涉文學研究

\* 서점에서 날권으로 판매합니다.  
각권·값 5,000원~7,000원 / 民音社 刊

북거일 장편소설  
**碑銘을 찾아서:**  
京城, 쇼우와 62년

우리가 지금도 일본인의 지배하에 차별받는 '반도인'으로 예속되어, 우리 말과 역사가 송두리째 말살되고 민족적 뿌리가 없어진 상태 속에서 참담하게 살고 있다면...

“의표를 찌른 기발한 착상에도 불구하고 매우 사실적이며 섬세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이 소설의 출현은 앞으로의 우리 장편 문학이 나아갈 길 한가지를 암시해 주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동시에 이 소설이 80년대의 침체한 소설 분야에 가장 뛰어난 성과의 하나로 꼽힐 것으로 확신한다.”

— 문학과지성 편집동인  
· 크라운판·510면·값 4,200원

**文學과知性社** 715-0151

**달빛고요**  
鄭木日/수필집

● 이미 잃어버린 우리들 추억의 빛바랜 사진첩을 다시 되돌려 주는 아름다운 글 모음집! 2,700원

**미워하며 에尹  
사랑하며 세弘  
이老**

● 우리들 삶의 그늘에 잔잔하게 번져 오는 그리운 글로 엮은 파스텔 畫帖! 3,000원

汎潮社 265-5659 / 275-2643

**「출판디자인」**  
전문성 선언!

- Book-cover Design
- Editorial Design
- Magazine Logotype
- 출판사 C.I.P.
- 서점 Display

Design Consultants for Marketing & Corporate Communication  
**빅터디자인하우스**  
V.I.C.P.O. (서울중구 신당2동 421-1 대한빌딩 304호, Tel:234-1709)